

생명농업실천위원회 축산위원회

가농소(우리농한우) 사육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유기순환체계를 위한 생명농업실천위원회 축산위원회' 부속규정으로 가농소에 대한 사육환경, 사육사양 관련 원칙이다.

2조 (범위)

1. 사육방법
2. 축사환경
3. 사육관리
4. 유기소의 구분
5. 출하가격의 결정
6. 시범포 운영 및 직거래 관리
7. 기타 필요한 사항

3조 (사육환경, 질병 및 입식관리) 유기순환-지역순환적인 자급사료 및 자급퇴비 실현과 건강한 가농소 사육을 목표로 한다.

1. 사육사양

- ① 유기순환-지역순환적인 자급사료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 ② 입식지원 가농소는 품종계량 된 등록우를 입식하고, 모든 가농소는 계류하여 사육할 수 없으며, 아래 '2항 축사 관리'에 따라 1마리~최대 20마리까지 각 농가에 분산 사육해야 한다.
- ③ 자급사료는 무농약 이상 농사부산물, 자가 또는 지역 농사부산물, 사료포를 조성하여 생산한 자가사료를 말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보릿겨, 쌀겨, 깻묵과 활성화탄, 미생물도 허용한다.
- ④ 자급퇴비는 축사에 깔짚을 깔아주고 자급사료를 먹고 싼 똥오줌을 정기적으로 모아서 완숙 퇴비로 만들어 자가 농사에 쓰는 퇴비를 말한다.
- ⑤ 사료포 조성은 1마리당 200평을 기준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급이 가능한 사료 대체작물도 인정한다.(예 두과작물, 옥수수 등)

2. 축사관리

- ① 마리당 축사면적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부과기준에 따라 번식우 최소 9.2m² (2.78평), 비육우 최소 7.1m² (2.15평)을 확보해야한다.
- ② 공기순환, 온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해를 끼치지 않도록 햇빛과 바람이 잘 들어야 하고, 오폐수가 축사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정 면적의 퇴비사를 확보해야 한다.
- ③ 그러나 사육농가의 상황이 위 ①, ②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운동장이 있어야 한다.
- ④ 축사 깔짚은 무농약 이상 벼짚, 왕겨, 낙엽 및 부엽토, 파쇄목, 톱밥으로 하고 미생물 또는 쌀겨, 깻묵을 투여할 수 있다.
- ⑤ 축사 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하여 교차 감염과 질병 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해야 한다.

3. 질병관리

- ① 질병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질병예방과 법정전염병 발생 우려와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예방조치 및 사육장 위생관리
- ③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한 구제
- ④ 위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 ⑤ 황소는 거세할 수 없다.

4. 입식관리

- ① 신규 또는 추가 입식 계획 농가는 교구 축산위원회에 사육계획을 제출하고 교구 축산위원회의 승인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입식을 한다.
- ② 현장실태조사서(서식 1)를 교구 축산위원회에 제출 → 축산위원회 승인 후 위원장 명의로 농가에 통보
- ③ 가농소를 한우생산이력제에 등록 → 가톨릭농민회에 등록 → 가농소 개채관리 카드 작성(서식 2) 및 가농소 귀표 부여와 부착(서식 4 귀표)
- ④ 농가당 입식 두수는 위 1항 사육사양 ⑤호와 2항 축사관리 ①호에 맞게 적정 두수를 입식해야 한다.

5. 서류보관

구분	관리자			의무사항	별첨양식
	사육농가	연합회	축산위원회		
① 사육일지	●			위원회 요청 시 제출	
② 입식지원 가농소 개체관리카드	●	●	●	변동 때 즉시 보고	서식 2
③ 자가입식 가농소 개체관리카드	●	●	●	변동 때 즉시 보고	서식 2
④ 가농소 현장실태조사서		●	●	변동 때 즉시 보고	서식 1
⑤ 가농소 사육현황표		●	●	변동 때 즉시 보고	서식 3
⑥ 가농소 귀표		●	●	변동 때 즉시 보고	서식 4
⑦ 축협 바코드	●			변동 때 즉시 보고	

4조 (출하관리)

1. 입식지원 가농소

- ① 출하할 때까지 사육기간은 정상분만 2산후, 약 8개월 전후로 비육하여 출하할 때 까지 약 42개월 이상으로 한다.(참고 : 4~6개월 령, 입식→ 7~9개월 사육 후 초임→ 초임 후 10개월 후 분만→ 분만 후 2개월 2산 임신→ 10개월 후 분만→ 어미 소 8개월 전후 비육 후 도축 : 총 42개월 이상 걸림)
- ② 입식지원 가농소가 1산후 한차례라도 분만을 실패하면 3산까지 허용하고 3산에도 실패하면 비육하여 출하한다.
- ③ 입식지원 가농소가 선천적 결함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곧바로 비육으로 전환한다. 단, 불임의 판정 경우에는 수정을 4회까지 허용하는데, 그래도 수정이 안되면 불임으로 간주 비육하여 출하한다.

2. 자가입식 가농소

① 사육구분

- ㉠ 가농소는 6개월령의 송아지 때부터 자급사료로 완전 전환하여 키운 소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렇게 키운 소가 낳은 송아지를 가농소로 인정한다.
- ㉡ 전환기소는 **6개월 이상** 자급사료로 전환하여 키운 소를 말하며 **가농소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② 출하기준

- ㉠ 자가입식 가농소를 출하할 때까지 사육기간은 암소는 3산까지 허용하며, 황소는 생후 24개월 이상 사육해야 출하할 수 있다.

3. 출하순서

- ① 입식지원 가농소와 이 소가 낳은 소를 우선 출하한다.
②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순환적인 자급사료와 퇴비체계 및 소규모 분산 사육에 충실한 사육농가의 소를 우선 출하한다.
③ 적정 마리 수 확보를 위해 본회에서 송아지 때부터 사육하기로 정한 소를 우선적으로 출하한다.
④ 분만한 유기 송아지 중 숫 송아지는 회원 농가를 지정하여 사육할 수 있다.

4. 사육비 산정은 '도농간의 약속 8조 입식지원 가농소 사육비산정과 지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입식지원 가농소가 정상 분만 했을 때 1~2산 송아지 두 마리를 사육비 대신 지급한다. 1~3산 까지 송아지를 한 마리밖에 얻지 못했더라도, 사육농가는 그 손실을 감수한다.
② 입식지원 가농소 중 원천적인 불임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육농가는 비육으로 빨리 전환해야 하며, 도시생활공동체는 이 소의 나눔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으로 사육농가에 사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위 ②호의 사고소 사육기간은 생후 26개월을 기준으로 체중은 470kg 이상이 되어야 출하할 수 있으며, 470kg이 안될 경우 '도·농협력모임 운영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위 ②호의 사고소 경우 사육 농민에게 지급할 사육비는 ㉠ 사육농가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사육 개월 수×12만원}을 지급하고 ㉡ 선천적 결함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육 개월 수×16만원}을 지급한다.
⑤ 위 ④호의 경우 농민에게 지급할 사육비는 '도농간의 약속 5조의 특별기금'과 해당 소 나눔 수익금의 각 50%로 보전한다.

5. 그러나 입사지원 가농소 사육농가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경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양도 시 가격을 별도로 정한다(추후 운영위에서 논의)

6. 소나눔 직거래 계획, 출하의 집행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본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5조 (가농소 출하 가격산정 기준)

1. 자가입식 가농소

① 생채(살아있는 소) 중량 1kg 기준

① 유기 암소	13,000원
② 유기 황소	12,000원
③ 전환기 암소(1년이상~2년미만)	11,500원
④ 전환기 황소(1년이상~2년미만)	10,000원
⑤ 전환기 암소(6개월이상~1년미만)	10,500원
⑥ 전환기 황소((6개월이상~1년미만)	9,500원

② 위 1항의 가격산정은 본위원회에서 의논하여 도농협력모임에서 정한다.

2. 유기 송아지 인정과 회원끼리 거래할 경우 가격산정

- ① 유기 암송아지는 6~7개월 령 이상을 기준으로 거래당일 일반 시세에 70만원을 더한다.
- ② 유기 황송아지는 5~6개월 령 이상을 기준으로 거래당일 일반 시세에 50만원을 더한다.
- ③ 단, 위 ① ②호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가농소 전체가 유기소로 전환되었을 때 안정적인 송아지 가격보장을 위해 재조정 한다.

6조 (사육농가의 책임과 의무)

1. 시범포 관리 - 사육농가는 '도농간의 약속 9조 책임과 의무 2항과 3항'에 따라 자급퇴비 시범포를 별도로 관리하고, 시범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입식지원 도시 생활공동체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한다.
2. 가농소 사육 조건 - '도농간의 약속 9조 책임과 의무 6항'에 따라 입식지원 가농소를 사육할 때에는 사육농가 부담으로 자가입식을 해야 하며, 자가입식 가농소(유기소 또는 전환기 소)를 사육할 때에는 입식지원 가농소 사육해야한다.
3. 입식지원 가농소가 폐사할 경우 사육농가가 책임지며, 재입식금 보전은 '도농간의

약속 9조 책임과 의무 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해당 입식 소를 구입하고 남은 특별기금 불입금= $\{($ 해당 소 지원금 350만원) $\}-$ (해당 소 구입금) $\}$
 - ② 사육농가와 입식지원 도시생활공동체 분담금= $\{($ 재입식 송아지 값) $\}-$ (위 ①의 특별기금불입금) $\}$ 의 50%를 각각 분담.
 - ③ 사육농가는 폐사에 대비하여 사육비와 재입식금 보전을 위해 공제보험에 들 수도 있다.
4. 사육농가는 관련규정을 지키고, 교육과 회의에 참석하며, 기금조성 및 제정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5. 사육농가는 사육할 소를 입식(자가 생산 송아지 포함)하기 전에 본위원회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원장은 사육농가의 참관 하에 위'3조 4항 입식관리'에 따라 조치해야한다.
 6. 사육농가는 입식지원 가농소에게 문제가 발생 될 경우 본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위원장은 상황을 파악한 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조치를 해야한다. 단 화급한 상황은 위원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실태조사 등의 검증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하여 현장방문 면담조사와 3조 2항의 서류보관에 따라 점검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부칙

1조 이 규정은 '축산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생명농업실천위원회'에서 승인한다.

2조 이 규정은 본회 자체의 '유기순환체계를 위한 가농소 사육규정'으로 정부의 '유기축산 인증'과 다르며 본회에서는 정부의 유기축산인증규정보다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010년 7월 12일 생명농업실천위원회 개정

2011년 11월 7일 생명농업실천위원회 개정

□벌꿀 생산·출하 기준

구 분	기 준
생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양꿀과 꽃꿀(천연꿀)로 구분하여 꽃꿀만 취급한다. - 사양꿀의 혼입을 금지한다. - 사양꿀은 정리채밀(1차채밀)을 통하여 자가 처리한다. - 2차채밀한 꽃꿀(천연꿀)부터 공급한다. - 수분은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인공적인 색소 및 인공감미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 항생제사용을 금지한다. 단 질병치료 목적에 한해서 사용하고, 협의 후 표기할 수 있다. - 벌이 꿀을 채취하는 시기에는 설탕물 공급을 금지한다. - 정해진 규격에 맞게 소분하는 시설은 이물질이나 곤충류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고 위생모와 위생복 착용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진드기와 가시응애 등의 해충방제를 목적으로 사용한 약제는 최대한 친환경제 재료 사용하고 생산일지에 기록하여 담당교구에 제출한다.
보관 및 출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밀한 꿀은 15℃ 이상에서 보관한다. - 포장규격은 500g, 1kg, 2kg, 1,2kg, 2.4kg으로 한다. - 자가 생산한 벌꿀은 보건복지부 고시벌꿀 규격기준에 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담당교구에 제출한다.(탄소동위원소 비율과 항생제 검사는 표기되어야 함) - 유통기한은 소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가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결정은 1년에 한번씩 분과에서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결정하고 전교구가 동일하게 적용한다.

[벌꿀분과 2011.6.15] [2차 생명농업실천위원회 2011.11.7 승인]

□유정란 생산·출하 기준

구 분	기 준
계사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목장, 개방형 평사(야마기시형 등)를 기본으로 한다. - 기본조건 이외의 경우 사유서를 유정란분과에 제출하고 회의를 통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한다.(2012. 3. 8 유정란분과 추가) - 단위면적 당 사육규모는 평당 13마리(암탉)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암수비율은 15:1 이내로 유지한다.
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아리 입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게 중병아리를 입식할 시에는 입식 후 4개월까지 출하할 수 없다. - 어린병아리(초생추) : 갓 태어난 병아리의 첫 먹이로 통현미와 대나무잎을 급여함으로써 내장기능을 튼튼히 하고, 그 길이도 일반닭의 1.5배 정도로 늘려 사료효율을 높이는 한편 소화흡수력의 향상으로 계분냄새가 없도록 한다. - 중 병아리(중추) : 각각의 성장단계에 맞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왕겨와 풀, 발효사료 등 거친사료를 소화할 수 있도록 키운다. - 물은 식수로 가능한 것을 준다. - 점등관리 및 부리절단 등 인위적인 방법 사용을 금지한다.
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난황각색제 등을 뺀 주문배합사료 및 자가사료로 사육한다. - 농업부산물 등 조사료 공급을 충분히 하고, 자급사료를 20~30% 급여한다. - 미량원소 공급원인 풀을 마리당 10~15g 정도 주고 겨울철에는 엔시리지를 먹여 사육한다. - 사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배합기술을 발전시켜 자가사료 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한다. - 사육마릿수에 맞는 풀과 엔시리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를 확보한다.
질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사항 : 한방 영양제와 효소 등을 사용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 육성기에는 예방주사, 사료첨가투약, 주사, 구충제, 소독, 영양제가 가능하고

	<p>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질병예방관리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란기에는 평소 투약을 금지하며, 질병 시에만 주사하고 투약 후에 약품별 충분한 휴약기간을 준수한다.(법정기간의 2배)
출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란 비율을 85%이상으로 한다. - 크기별 등급은 구분하지 않지만 출하에 대한 최대, 최소 설정하여 적용한다. - 45g 이상이며 서로 부딪쳐서 깨지지 않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 및 이상은 별도 처리한다. - 파란(破卵, 실금이 간 것), 하얀색 알, 점이 많이 찍힌 알, 표면이 고르지 않은 알, 쌍란, 왕란, 오란(汚卵)은 출하 금지한다.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 : 봄, 가을, 겨울은 30일, 여름은 20일로 통일한다. 단, 시기변경은 분과회의에서 결정하고 미리 공지하여 적용키로 한다. - 보관 및 운송 : 20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운송하도록 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품기준 : 난황과 난백이 심하게 풀어지는 알 - 사육 관리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항생제 잔류검사를 연 2회 실시한다. - 연 2회 항생제 잔류검사는 회원별로 따로 검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추진한다.(2012. 3. 8 유정란분과 수정)

[3차 유정란분과 2011.6.15] [2차 생명농업실천위원회 2011.11.7 승인]